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10. 27.

행정위원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0월 13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22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0.10.25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정희)

가. 제안이유

-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평생건강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 도모와 평등하고 기본적인 복지차원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.

나. 주요골자

-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“급식”, “무상급식”, “급식에 필요한 경비”, “식재료”에 대한 용어정의(안 제2조)
- 지방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무상급식을 위한 협조(안 제3조)
- 지원대상을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의한 유치원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등으로 규정(안 제4조)

- 지원방법으로 예산 또는 현물지원을 규정(안 제5조)
- 15명 이내의 “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”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(안 제6조)
-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7조)
- 지원대상자의 친환경농산물 사용 및 지원금 정산의무(안 제8조)
-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지도·감독(안 제9조)
- 기타 시행규칙 및 준용사항(안 제10조~11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이 현 영)

- 본 조례안은 「헌법」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이며 권리인 교육의 권리 중 의무교육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으로 평등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지원을 위한 「학교급식법」 제3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
-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무상급식 계획, 재정지원 기준 등의 역할분담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
-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하여 기존 교육사업이나 주민생활에 직결된 사업 등을 폐지하거나 축소가 우려되므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조례안 제6조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, 기타부문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

4. 審査結課 : 不決 (찬성 4, 반대 4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 16 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연월일 : 2010.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 향상 도모 및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상급식을 통한 진정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제1조(목적)

-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고, 성장기 학생 및 영·유아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무상급식 실현

나. 제2조(정의)

- 급식, 무상급식, 급식에 필요한 경비, 식재료 정의

다. 제3조(자치단체의 임무)

-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에 지원
- 국가, 서울시, 교육청의 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급식의 주체들과 협조하여 무상급식 실현

라. 제4조(지원대상)

-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,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마. 제5조(지원방법)

- 급식지원 신청, 지원체제 등은 규칙으로 정함

바. 제6조(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설치)

- 무상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
-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 : 부구청장
- 위 원 : 행정국장, 구의원, 교육청, 외부위원 등
- 임 기 : 2년 단임

사. 제7조(급식지원센터의 설치)

-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
아. 제8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

-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, 집행정산서 제출

자. 제9조(지도·감독)

- 급식경비 집행적정 여부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교육청 위탁 가능

차. 제10조(시행규칙)

-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

카. 제11조(준용)

-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 준용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3항
- 2) 학교급식법 제3조, 제8조,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2011년 예산편성 요구(1,800,000천원)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2010. 8. 19. ~ 2010. 9. 8. 20일간
- 2) 의견접수 : 진보신당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 정호진
- 3) 조치내용 : 일부 반영(요약서 별첨)

마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- 붙임 : 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결과 보고서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급식법」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고, 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·유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무상급식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급식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.
2. “무상급식”이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, 학교 및 시설의 설립·경영자가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급식에 필요한 경비”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,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·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.
4. “식재료”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·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,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「농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품질인증 우수 농산물
 - 나. 「친환경농업 육성법」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
 - 다. 「축산법」, 「축산물 가공처리법」, 「친환경농업 육성법」에 따른 무항생제 등급 이상으로서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」과 「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」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
 - 라. 「식품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
 - 마. 「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(원양산을 포함한다)
 - 바.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

사. 그 밖에 「학교급식법」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식재료

제3조(자치단체의 임무) ①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에 지원한다.

②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급식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급식의 주체들과 협조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.

1.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에 의한 학교
2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의한 유치원
3. 「영유아 보육법」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5조(지원방법) ① 구청장은 급식을 위하여 예산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4호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③ 급식지원 신청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설치) ① 구청장은 무상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부구청장
2. 영등포구 학교급식담당 국장
3.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 국장
4. 영등포구의회 의원

5. 각급 학교 및 유치원, 보육시설의 장

6. 식품 또는 조리 전문가

7. 학부모단체 및 학부모
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, 영등포구 학교급식담당 국장,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 국장이 된다.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급식지원센터 설치)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관리·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지급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.
②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20일까지 집행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지급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,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지도, 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